

요양병원 평가 세부 추진 계획

1. 평가 대상

가. 대상 기관

-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나. 대상 기간

- 2012년 1월 ~ 3월 (1/4분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액 입원 진료분

2. 평가 기준

□ 평가 지표

【평가지표 선정기준】

3차년도 평가결과 및 추가·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선정

◆ 구조부문 (26개 지표)

부 문	세 부 항목	지 표 명	비 고
구 조	기본시설	○병실의 병상 당 적정면적 충족률 ○다 인실(7인실 이상) 병상의 비율 ○화장실이 있는 병상의 비율	

부 문	세부 항목	지 표 명	비 고
구조	기본시설	○적정욕실의 유무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휴게실, 식당)	보완 보완
	환자안전	○바닥의 턱 제거율(병실, 욕실, 화장실) ○바닥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율(욕실, 화장실,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율(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응급호출 시스템 구비율(병상, 욕실, 화장실)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소방점검활동 수행 유무	보완 보완
	의료인력	○의사 1인당 환자수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간호인력의 이직률	보완
	필요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약사(약국 포함) 재직일수율 ○방사선사(방사선촬영실 포함) 재직일수율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의료장비	○100병상 당 산소공급장비 보유대수 ○100병상 당 흡인기 보유대수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보유대수 ○100병상 당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Pulse oxymeter) 보유대수	

◆ 진료부문 (10개)

부 문	항 목	지 표 명	비 고
진 료	과 정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시 MMSE 검사 실시 환자분율 ○유치도노관이 있는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당뇨 환자 중 HbA1c 검사 실시 환자분율	보완
	결 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고위험군/저위험군)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 모니터링 부문 (7개)

지 표 명	비 고
○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추가
○ 폐렴 발생률	보완
○ 폐혈증 발생률	보완
○ 폐렴 치료기간 비율	보완
○ 폐혈증 치료기간 비율	보완
○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_전문재활치료군	
○ 진료비 고가도 지표	보완

※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추가 공지 예정)

3. 평가 방법

가. 부문별 평가 방법

- 구조부문: 의료서비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구조지표는 기관별 지표값의 분포 또는 지표 성격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함
- 과정 및 결과부문: 요양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의해 나타난 환자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실시함
- 모니터링 부문: 종합지표 산출에서는 제외하고 요양병원에 피드백하여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 값을 산출함
- 종합지표 산출: 기관별 종합지표는 구조부문과 과정·결과부문의 각 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를 기관별 상대평가 함

나. 자료 수집

- 구조부문: 요양병원 현황신고자료 및 조사표(웹 방식)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 인력 및 현황 신고자료: 2012년 4월말까지 신고 된 자료 기준
 - 웹 조사표 작성: 2012년 2월 15일 기준
- 과정 및 결과부문: 진료비청구 자료, 환자평가표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 심사차수: 2012년 5월 심사차수 기준
- 신뢰도 점검
 - 구조부문: 요양병원 중 일부 기관을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표 관련 현장 확인 조사 및 첨부자료 확인
 - 과정 및 결과부문: 요양병원 중 일부 기관을 무작위 선정하여 일부 대상 건에 대해 의무기록 작성내용 등 확인
- 평가자료 수정
 - 요양기관에서 웹 조사표 작성 후 심평원에서 공지한 확인기간동안 수정요청하면 조사표 내용 수정
 - 신뢰도점검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 심평원에서 수정
 - 실태조사 등 다른 경로로 확인된 내용은 신뢰도점검 완료 후 분석단계 이전 까지만 수정
 - 최종 평가자료로 구축 전 평가대상 요양병원에 최종자료 확인요청 문서시행

4. 평가결과의 활용

- 요양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 정보 제공
 - 전체 및 동일 병상규모의 평균값을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대국민 홍보 및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 의료수요자에게 요양병원의 구조 및 질에 대한 세부정보 공개

- 정부 및 관련 단체나 유관 기관에 평가 결과 제공
 -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학회 차원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마련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부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공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구조 및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기관은 입원료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제외(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적용)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6호(2009.11.30)

5. 향후 추진일정(안)

- 2011년 11월: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 요양병원 설명회 실시
 - 2012년 02월: 조사표 작성
 - 2012년 11월: 평가결과 도출
 - 2012년 12월: 중앙평가위원회 심의
 - 2012년 12월: 평가결과 공개
 - 2013년 1월~6월: 평가결과 환류(수가연계)
- ※ 추진일정은 평가자료 수집 등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평가지표별 세부내용

▶ 구조부문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기본 시설	병실의 병상당 적정 면적 충족률	○일정 기준시점 전체 병상 중 병상 당 적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병실의 병상비율	$\frac{\text{병실 적정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병실의 병상 수}}{\text{전체 병상 수}} \times 100$ ※ 적정면적: 1인실 6.3㎡ 이상, 2인실 이상 병상 당 4.3㎡ 이상	
	다인실(7인실 이상) 병상의 비율	○일정 기준시점 전체 병상 중 다인실 (7인실 이상)병상의 비율	$\frac{\text{다인실의 병상 수}}{\text{전체 병상 수}} \times 100$	
	화장실이 있는 병상의 비율	○일정 기준시점 전체 병상 중 화장실이 있는 병실의 병상(병실별 최대 6 병상) 비율	$\frac{\text{화장실이 있는 병실의 병상 수 (병실별 최대 6병상)}}{\text{전체 병상 수}} \times 100$	
	적정 욕실의 유무	○일정 기준시점 적정 욕실의 유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욕실 유무 ※ 세 가지 조건 - 침대차가 들어가고 보조 인력에 의한 목욕이 가능한 면적(7.2㎡ 이상) - 온수 공급 - 난방 시설 구비(이동식 난방시설 제외)	보완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 (식당, 휴게실)	○일정 기준시점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의 식당과 휴게실 구비율	$\frac{\text{점수의 합}}{\text{대상 공간의 수}} \times 100$ ※ 해당 공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보완
환자 안전	바닥의 턱 제거율 (병실, 욕실, 화장실)	○일정 기준시점 병실, 욕실, 화장실 중 바닥의 턱이 제거된 공간의 비율	$\frac{\text{바닥의 턱을 제거한 공간의 수}}{\text{대상 공간의 수}}$	
	바닥의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율 (욕실, 화장실, 계단)	○일정 기준시점 욕실, 화장실, 계단 중 바닥에 미끄럼 시설이 설치된 공간의 비율	$\frac{\text{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공간의 수}}{\text{대상 공간의 수}}$ ※ 미끄럼 방지 시설: 울퉁불퉁한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혹은 티일 등(스프레이, 희석식 약품 처리, 경질 고무류의 띠 처리 등은 제외)	
	안전손잡이 설치율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일정 기준시점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중 안전손잡이가 설치된 공간의 비율	$\frac{\text{안전손잡이를 설치한 공간의 수}}{\text{대상 공간의 수}}$ ※ 안전손잡이: 일반 손잡이 포함, 수평, 수직 손잡이	
	응급호출시스템 구비율 (병상, 욕실, 화장실)	○일정 기준시점 병상, 욕실, 화장실 등 작동되는 응급호출 시스템이 구비된 공간의 비율	$\frac{\text{응급호출시스템을 구비한 공간의 수}}{\text{대상 공간의 수}}$	

주 1. 기준시점: 2012년 2월 15일

2. 환자안전 4개 지표는 각 공간의 전체에 대하여 환자안전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공간에 환자안전을 설치한 것으로 정의함 (예. 3개의 욕실 중 2개의 욕실에만 바닥의 턱을 제거한 경우, 욕실은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함)

▶ 구조부문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환자 안전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대상기간 감염관리 활동 중 수행하고 있는 감염관리 활동의 비율	$\frac{\text{수행하고 있는 감염관리 활동의 수}}{\text{평가대상 감염관리 활동의 수}} \times 100$ ※ 감염관리 활동 1. 문서화된 감염관리 지침 (감염관리 실무 담당자 지정, 감염성폐기물 처리방법, 감염 예방을 위한 기구소독 및 사용방법, 손씻기 방법, 도뇨관 관리방법, 욕창관리법은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제작된 책자 또는 출력물) 마련 및 공개된 장소에 비치 2. 감염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최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이상 실시, 교육 자료인 책자, 팸플릿, 기타 PPT 자료 등은 교육일지와 함께 보관) 및 교육일지 비치 3. 의료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전문적인 처리 4. 위생적인 세탁물 관리(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수집 장소 마련 · 오염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의 분리수집	보완
	소방점검활동 수행 여부	○일정 기준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소방관련 점검 실시 여부	평가대상기간 시작 시점 기준시점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관련 점검을 실시한 경우 실시, 아니면 미실시	보완
의료 인력	의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의사수}}$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사수}}$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간호인력의 이직률	○대상기간 동안의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병동 근무 간호인력 이직률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재직했던 모든 간호인력수} \times 100}{\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간호인력수}} - 100$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대상기간 동안의 평일 야간(18시 ~ 09시)과 휴일 24시간 동안 상주하는 당직 의사 유무	$\frac{\text{대상기간 해당일에 당직의사가 있었던 일수의 합계}}{\text{대상기간 해당일수의 합계}} = 1 \text{ 이면 유}$ $< 1 \text{ 이면 무}$	보완
필요 인력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수	○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 1인당 평균 환자수	$\frac{\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환자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평균 물리치료사수}}$	
	약사(약국 포함)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동안 약국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할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약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약국: 대상기간동안 약의 조제, 보관, 관리 등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	
	방사선사(방사선촬영실 포함)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동안 방사선 촬영실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방사선사가 재직할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방사선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 방사선 촬영실: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지장 없는 면적과 방사선 촬영 장비,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춘 별도의 공간(반드시 촬영 장비 구비)	

주 1. 기준시점: 2012년 2월 15일

2. 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2012년 3월 31일(단, 간호 인력의 이직률의 대상기간: 2011년 10월 1일~2012년 3월 31일,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의 대상기간: 조사표 작성 기준시점 이전 2주일간)

▶ 구조부문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필요 인력	임상병리사(임상검사실 포함)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동안 임상 검사실이 있으면서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임상 병리사가 재직 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임상병리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 임상 검사실: 혈구검사, 혈액화학검사, 요검사 등 기본 임상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간으로 내·외부 정도관리가 되고 있는 공간	
	사회복지사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사회복지사가 재직 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의무기록사 재직일수율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의무기록사가 재직 한 일수의 비율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의무기록사의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일수}} \times 100$	
의료 장비	100병상 당 산소공급장비 보유대수	○일정 기준시점 100병상 당 산소공급 장비 보유 대수	$\frac{\text{산소공급장비 보유대수}}{\text{전체 병상수}} \times 100$	
	100병상 당 흡인기 보유대수	○일정 기준시점 100병상 당 흡인기 보유대수	$\frac{\text{흡인기 보유대수}}{\text{전체 병상수}} \times 100$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 보유대수	○일정 기준시점 100병상 당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보유대수	$\frac{\text{심전도 모니터보유대수}}{\text{전체 병상수}} \times 100$	
	100병상 당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 보유대수	○일정 기준시점 100병상당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장비(pulse oximeter) 보유대수	$\frac{\text{혈중 산소포화도 감시장비 보유대수}}{\text{전체 병상수}} \times 100$	

주 1. 기준시점: 2012년 2월 15일
 2. 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3월 31일

▶ 진료부문

영역	지 표 명	지 표 정 의	산 출 식	비고
과정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시 MMSE검사 실시 환자분율	○ 65세 이상 노인 중 입원 시 평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MMSE검사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 '섬망'이 있거나 '혼수'가 있으면서 '기관 절개관 관리'를 하는 경우	$\frac{\text{입원 시 평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MMSE검사를 실시한 환자}}{\text{65세 이상 입원 환자}} \times 100$	보완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의 분율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 1. 변실금 항목이 '조절 못함' 인 경우 2.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3.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4. 사지마비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 제외대상 - 해당 월 평가가 입원평가인 경우	$\frac{\text{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중 고위험군/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 진료부문

영역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과정	당뇨환자 중 HbA1c검사 실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환자 중 최근 1년 동안 HbA1c(당화혈색소)검사를 실시한 환자분율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frac{\text{최근 1년 동안 HbA1c검사를 실시한 환자}}{\text{당뇨 환자}} \times 100$	
결과	일상생활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치매환자군/치매환자제외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감퇴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퇴: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증가한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2이상 증가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월 평가에서 10가지 ADL의 값이 모두 '전적인 도움'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이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frac{\text{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감퇴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치매환자(치매가 아닌 환자)}} \times 100$	
	요실금 환자분율_저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 중 요실금이 있는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지능력이 심하게 손상된 환자 (일상 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됨' 이면서, 단기 기억력이 '이상 있음'인 경우) 2. 이동관련 ADL- 체위변경하기(또는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가 모두 '전적인 도움' 이거나 '행위발생안함'인 경우 ○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월 평가가 입원 평가인 경우 2. '혼수'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3. 유치도뇨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4. 요루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frac{\text{해당월 평가에서 요실금이 있는 환자}}{\text{해당월 평가를 실시한 환자 중 고위험군을 제외한 환자}} \times 100$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고위험군/저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frac{\text{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_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에 비해 욕창이 악화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2.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3.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4.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 욕창의 악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개수가 늘어난 경우 2.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단계가 심해진 경우 	$\frac{\text{전월 평가에 비해 해당 월 평가에서 욕창이 악화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과 해당 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 모니터링부문

지 표 명	지표정의	산 출 식	비고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기준시점 적정 승강기 설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retcher car(1850mm×700mm×700mm)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승강기만 인정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 1층에 개설하여 1층만 운영하는 기관 2. 개설 운영하는 층을 포함하여 그 이하 모든 층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적정 승강기가 일정기준 시점 설치되어 있으면 있음, 아니면 없음 - 조건: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부터 맞은편 벽까지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추가
폐렴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는 전체 환자 중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입원일수가 6일 미만인 환자 2.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첫 번째 폐렴 발생 건 제외) 	$\frac{\text{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건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입원중인 전체 환자의 폐렴 치료기간을 제외한 입원일수의 합}} \times 1000$	보완
폐혈증 발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입원하고 있는 전체 환자 중 폐혈증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비율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입원일수가 6일 미만인 경우 2.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환자(첫 번째 폐혈증 발생 건 제외)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폐혈증이 발생한 건수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입원중인 전체 환자의 폐혈증 치료기간을 제외한 입원일수의 합}} \times 1000$	보완
폐렴 치료기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폐렴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폐렴 치료기간의 비율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입원일수가 6일 미만인 경우 2. 대상기간 동안 폐렴을 갖고 입원한 경우(첫 번째 폐렴 발생 건 제외) 3. 폐렴 치료기간 중 전원·사망한 환자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폐렴 발생 환자별 폐렴 치료기간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폐렴이 발생한 환자수의 합}}$	보완
폐혈증 치료기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동안 폐혈증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폐혈증 치료기간의 비율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기간 동안 입원일수가 6일 미만인 경우 2. 대상기간 동안 폐혈증을 갖고 입원한 경우(첫 번째 폐혈증 발생 건 제외) 3. 폐혈증 치료기간 중 전원·사망한 환자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폐혈증 발생 환자별 폐혈증 치료기간의 합}}{\text{대상기간동안 폐혈증이 발생한 환자수의 합}}$	보완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 _전문재활치료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재활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군에서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10개 ADL 항목 중 값이 1 이상 감소한 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월 평가에서 ADL 10개 문항이 모두 '완전자립'인 경우 2. 개선과 감퇴가 모두 발생한 경우 	$\frac{\text{해당 월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전월보다 개선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전문재활 치료군 환자}} \times 100$ <p>※ 전문재활치료군: 환자평가표 K2 * 지난 7일간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한 날수*가 2 이상인 경우</p>	
진료비 고가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의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입원 진료비 대비 실제 입원진료비 	$\frac{\text{정액수가 실제진료비} + \text{행위별수가 실제진료비}}{\text{정액수가 예측진료비} + \text{행위별수가 예측진료비}}$	보완

주 1. 기준시점: 2012년 2월 15일

2. 대상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3월 31일(단, 진료비 고가도 지표는 2011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

☞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추가공지 예정)